2 (제269회-의회운영위제1차부록)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재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정재환, 안영호, 이명녀

문기호, 강혜순, 문희성

박경흠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(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)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에 대하여 상위 법령 준용(안 제26조제3항)
- 나.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상위 법령 준용 (안 제28조제1항)
- 다. 상위 법령 준용에 따라 별표 4 및 별표 5 삭제
- 3.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관계법규: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 및 제25조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 및 별표 2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4. 11. 1. ~ 11. 7.(6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제1호 중 "별표 4"를 "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령」제17조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별표 5"를 "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25조"로 한다.

"별표 4"와 "별표 5"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26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	3
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	
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	
수(收受)를 금지하는 금품등에	
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	1
•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	
제공되는 음식물・경조사비・	
선물 <u>등으로서 별표 4</u> 에서 정	등으로서 「부정청탁 및 금품
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	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	<u>시행령」제17조</u>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	제28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
제한)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	제한) ①
관련되거나 그 지위 • 직책 등에	
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	
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・홍보・	
토론회・세미나・공청회 또는	
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•	
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	

등"이라 한다)의 <u>대가로서 별표</u>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~ ⑧ (생 략)

-----대가로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------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관 런 법 령

- □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)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"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 -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"이란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(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)를 말한다.
-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)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□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

-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
- 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.
- 3. 선물: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, 상품권(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, 이하 "상품권"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과 농수산물・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)으로 한다.

- 가. 금전
- 나. 유가증권(상품권은 제외한다)
- 다. 제1호의 음식물
- 라. 제2호의 경조사비

비고

-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 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 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. 제2호 본 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제3호에서 "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 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 다)하여 발행・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 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 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, 백화점상품권・온누리상품권・지역사랑상품권・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.
- 라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(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마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□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2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제25조 관련)

1.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

- 가.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(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): 40만원
- 나.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: 100만원
-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외국대학, 외국연구기관, 외국학술단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
2. 적용기준

- 가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, 기고의 경우 1건 당 상한액으로 한다.
- 나.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다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.
- 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가 개정되더라 도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3. 작성자

○ 소 속: 의회사무국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김 도 언

○ 연락처: 290-4245